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가스·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

- 가스·분말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 통합·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일반구조(안 제3조제9호, 제12호부터 제16호)
- 나. 제어부(안 제4조)
- 다. 음향장치 및 예비전원(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)
- 라. 자가발전장치 작동장치 및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작동장치
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
- 마. 이용성금속 감지부 및 유리벌브 감지부(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)
- 바. 분말소화약제, 가스계소화약제 및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(안 제8조제1항제4호, 9호, 10호, 제2항 및 제4항)
- 사. 용기, 결합부 및 밸브 등, 가압용가스용기, 가스도입관, 패킹, 지시압력계(안 제8조의2, 3, 4, 5, 6, 7)
- 아. 방사성능(안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)

자. 내식 및 방청시험(안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)

차. 합성수지노화시험 및 내압시험(안 제15조 및 제16조)

카. 안전밸브(안 제17조3항)

타. 소화시험, 표시사항(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, 제26조제4항)

파.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설비(안 별표2 1호)

하. 소화시험, 소화등급시험,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및 자동소화시험
(안 별표3, 별표 4, 별표 5 및 별표 6)

거. 소화약제 중(용)량 허용범위 및 자동소화장치 측 부착 부분의
치수 및 허용공차 신설(안 별표 7 및 별표 8)